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090100248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09. 5. 26.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 5. 28.

홈페이지
www.haenul.com
www.haenulsoondae.com

해늘참쌀순대

정 보 공 개 서

[(주)해늘]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 해 늘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39, 106-110호(고잔동)

전화번호: 032-468-3705

팩스번호: 032-468-3717

가맹담당부서 : 032-468-3705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 업 표 지	주 소			
(주) 해 늘	해 늘 찹쌀 순 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39, 106-110호(고잔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7.10.9	2007.10.15	오진호	032-468-3705	032-468-3717
	법인등록번호	110111-3765512	사업자등록번호	214-88-15925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 업 표 지	주 소		
오진호 (대표이사)	(주)해늘	해늘찹쌀순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39, 106-110호(고잔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오진호	032-468-3705	032-468-3717
관계	이름/상호	영 업 표 지	주 소		
김동순 (감사)	(주)해늘	해늘찹쌀순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39, 106-110호(고잔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오진호	032-468-3705	032-468-371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 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 업 표 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	-	-
---------------------	------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해늘찐쌀순대	해가 언제나 늘 비추는 행복한 외식 공간
상 호	해늘찐쌀순대oo점	
상표(서비스표) 별첨3 참조		등록번호: 4101740790000
		출원번호: 4016268260000
광 고		광고 및 집기 등에 사용
그 밖의 영업표지	특이사항없음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①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4년	3,426,725	3,117,194	309,530	1,530,435	239,693	110,047
2023년	3,150,444	2,950,960	199,483	1,173,512	211,658	90,260
2022년	3,243,299	3,134,076	109,223	998,596	58,260	7,856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 간	직 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오진호	대표이사	2001.2~현재	이화참쌀순대 대표	업무총괄
			2007.10~현재	(주)해늘 대표이사	업무총괄
	김동순	감 사	2007.10~	(주)해늘 감사	회계.자금
			2007.11~2016.09	해늘참쌀순대(양재)	업무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1	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않고 있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상표 (서비스 표)	권리 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 신청자)	존속 기간 만료일
	제29류	출원일자: 2007.10.19. 등록일자: 2008.09.10	출원번호: 4020070054110 등록번호: 4007605800000	주식회사 해늘	2028.09.10
	제43류	출원일자: 2007.10.19. 등록일자: 2008.09.10	출원번호: 4120070027418 등록번호: 4101740790000	주식회사 해늘	2028.09.10
	제29류	출원일자: 2019.03.06. 등록일자:	출원번호: 4020190033789 등록번호:	주식회사 해늘	2030.04.09

		2020.04.09.	4015947450000		
	제43류	출원일자: 2019.03.06. 등록일자: 2020.07.21.	출원번호: 4020190033790 등록번호: 40162682600000	주식회사 해늘	2030.07.21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해늘참쌀순대] 가맹사업 현황

1. [해늘참쌀순대] 를 시작한 날: 2008년 10월 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07년 11월 15일)

2. [해늘참쌀순대]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해늘	해늘참쌀순대	오진호	2008.10~ 2022.10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405 2동 2층
(주)해늘	해늘참쌀순대	오진호	2022.10-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39, 106-110호(고잔동)

3. [해늘참쌀순대] 업종

영업표지	업종	
해늘참쌀순대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참쌀순대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해늘참쌀순대]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7	7	-	7	7	-	6	6	-
서울	1	1	-	1	1	-	1	1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5	5	-	4	4	-	3	3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	1	-	2	2	-	2	2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해늘찹쌀순대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4	7	1	-	2	-	6
2023	7	1	1	-	-	7
2022	8	1	-	2	-	7

6. [해늘찹쌀순대]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해늘찹쌀순대]의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6	279,325	10,424	727,257	14,545	124,440	5,656	5
서울	1	해당없음						1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3	해당없음						2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2	해당없음						2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당사는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기 현황은 전체 6개 가맹점 중 5개 가맹점의 현황입니다.

8. [해늘참쌀순대]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 [해늘 참쌀순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	6	1,563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11. 가맹금 예치

가맹점사업자 피해 보상보험이 체결 되어 있습니다.(서울보증보험)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
보험계약자	(주)해늘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
보험금액	예치금액	-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우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 개월 소요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하십시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해늘 찹쌀순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가 맹 금	가맹본부	일부 예치	확정 금액
보 증 금	가맹본부	예치	-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	-	-	-
가맹비	5.500	계약체결 7일 이내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교육비	5.5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5,000	-	-	-
보증금	5,000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6,000
가맹비	5,500
교육비	5,500
계약이행보증금	5,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9]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해늘참쌀순대,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99.17㎡ (약30평)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7)의 거래 상대방 참고	120,821	4,027	면적당 금액: 총계/30 평		
인테리어		66,000	2,200	시공 시작 3 일 전	착공 전	-
간판		8,470	-	설치 3 일 전	주문 제작 전	-
POS		3,000	-	설치 3 일 전	상품 미공급시	3 년
주방설비, 기물		19,800	-	입고 3 일 전	상품 미공급시	-
의탁자		9,581	-	입고 3 일 전	상품 미공급시	-
식기 및 유텐실		8,470	-	입고 3 일 전	상품 미공급시	-
원·부재료		5,500	-	입고 3 일 전	상품 미공급시	-

(확장형-해늘참쌀순대&해늘냉면,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99.17㎡ (약30평)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7)의 거래 상대방 참고	129,621	4,320	면적당 금액: 총계/30 평		
인테리어		66,000	2,200	시공 시작 3 일 전	착공 전	-
간판		13,750	-	설치 3 일 전	주문 제작 전	-
POS		3,000	-	설치 3 일 전	상품 미공급시	3 년
주방설비, 기물		22,000	-	입고 3 일 전	상품	-

					미공급시	
의탁자		9,581	-	입고 3 일 전	상품 미공급시	-
식기 및 유텐실		9,790	-	입고 3 일 전	상품 미공급시	-
원·부재료		5,500		입고 3 일 전	상품 미공급시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비 평당(3.3㎡) **일금 삼십삼만원 (₩330,000)(부가세 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별도공사 : 전기증설, 철거, 조정, 화장실, 공조, 냉난방 등.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선정한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선정 지역 입지 협의 도출 → 가맹희망자와 본사가 최종 협의 하여 최종 결정함 ※ 가맹희망자와 합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입지 선정의 주체는 가맹 희망자이나 희망자의 입지가 기존 가맹점과 영업범위가 겹칠 경우 이거나 가맹본부의 입지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해늘 찹쌀 순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	잔금
금액(천원)	-	총액의 50%	-	-	-	50%
납부일	-	계약일	-	-	-	계약일+1개월
비고	-	-	-	-	-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 (로열티)	가맹본부	월매출액의 1.1%	매월 5일	-	소멸성 비용	-
광고·판촉	가맹본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고	명세서 수령 후 7일 이내	반환 안됨	광고비로 비용소요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당사 부담 (예외 있음)	-	-	-	경우에 따라 설비 지급
점포환경 개선비용	-	가맹본부가 요구시 : VII.1 외 비용	-	-	-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부담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금전 지급 기일 경과시
POS	가맹본부	44	-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문의: 가맹점관리부 (032-468-3705)
조리 및 위생	음식조리와 주방시설 위생점검	주1회	문의: 가맹점관리부 (032-468-3705)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①	금액 ^②	지급 기한	반환조건 ^③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추가 교육비 ^④	협약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추가교육 필요시
점포 이전비 ^⑤	협약하여 부담	점포 이전 후 10일 이내	점포 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점포이전 합의시
....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

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해늘찹쌀순대]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해늘]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

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할 경우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의 주요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해늘참쌀순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 2) 당사가 [해늘참쌀순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순대국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해늘정식			
순대정식			
모듬수육			
참쌀순대			
찰야채순대			
전골			
술국			
순대막창볶음			
물냉면			
비빔냉면			
냉면정식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 고
고등학교 재학생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본사 승인 없는 제3자	해늘의 각종매뉴얼 및 원부자재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순대국	8,000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및 공문	2024.12월 기준
해늘정식	11,000		
순대정식	10,000		
모듬수육	18,000		
찹쌀순대	9,000		
찰야채순대	8,000		
전골	30,000		
술국	18,000		
순대막창볶음	2,3000		
물냉면	8,000		
비빔냉면	8,000		
냉면정식	11,0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순대 또는 순대와 관련된 식품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해늘잡쌀순대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시 지역 : 동 단위를 기준으로 1점포 원칙. 단, 인구 50,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동일지라도 영업지역을 분할적용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군, 읍, 면 소재지에 입점 시 지역상권에 비해 인구의 밀집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의 경우 세대수 및 인구수의 기준을 별도특약에 의해 영업지역을 분할적용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해늘찹쌀순대’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유천냉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가맹점	유천냉면	참쌀순대국, 참쌀순대, 해늘수육 등	가맹점에서도 판매
일반 소매점	장수F&C	참쌀순대국, 참쌀순대, 해늘수육 등	가맹점에서도 판매
	이화참쌀순대		
기타	유천대가	해늘참쌀순대국, 해늘참쌀야채순대, 해늘모듬수육, 해늘한우소머리곰탕	가맹점에서도 판매
	이랜드 김스클럽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니온인터내셔널 (칭선생)	https://smartstore.naver.com/choingonepick	해늘참쌀순대국 밀키트형식	가맹점에서도 판매
	파이브센스	minishop.gmarket.co.kr 5sensesmall	해늘참쌀순대국, 해늘참쌀야채순대, 해늘모듬수육, 해늘한우소머리곰탕	가맹점에서도 판매
	쿠팡	https://coupang.com		
	네이버	https://www.naver.com		
	옥션	https://www.auction.co.kr/		
	지마켓	https://www.gmarket.co.kr/		
	11번가	https://www.11st.co.kr/main		
기타	유통의모든것	https://cafe.naver.com/brandselling		가맹점에서도 판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71	28	0	1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30	17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해늘참쌀순대]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5조 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5조 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5조 2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5조 2항
○ [해늘참쌀순대]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5조 2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5조 2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이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을'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갑'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날 60일 전에 서면으로 '갑'의 위반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을”이 가맹계약서 제5조 제5항의 계약갱신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조 1항
○ “을”이 가맹비, 교육비, 상품대금 등 금전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6조 1항
○ “을”이 필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조 1항
○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나 승계, 담보제공, 사업장위치 변경한 경우	6조 1항
○ “을”이 “갑”과 협의 없이 영업시간이나 영업일수를 위반한 경우	6조 1항
○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상호협의하거나 약정된 광고나 판촉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6조 1항
○ “을”이 노후화된 인테리어, 집기, 설비 등의 교체 · 보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6조 1항
○ “을”이 ‘필수품목’을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6조 1항
○ “을”이 가공방법, 판매상품의 종류, 판매방식, 적정재고유지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 · 삭제한 경우	6조 1항
○ “을”이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나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6조 1항
○ “을”이 가맹계약서 제12조[운영매뉴얼 준수 및 감독 · 시정요구권] 각 항을 위반하거나 “갑”의 시정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조 1항
○ “을”이 가맹계약서 제16조 소정의 광고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광고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6조 1항
○ “을”이 가맹계약서 제21조[지도지침준수 및 취급상품 제한]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6조 1항
○ 최초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6조 1항
○ 기타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6조 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6조 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6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조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귀하와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의 효력 발생 후 양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 하에 기명날인 있는 서면으로 추가 작성된 것은 문서는 본 계약의 추가 부분으로써 그 효력의 발생을 인정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 사항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거래계약 후 1년 이내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당사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양도할 경우 양수자 계약기간은 가맹점사업자의 잔여 계약기간으로 본다.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4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점관리부 (032-468-3705)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사유발생3개월이내 본부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본부의승인	-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	-
사업자변경	가맹본부의사전승인	모든 권리의무	본부의승인	계약기간은잔여기간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해늘찹쌀순대]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식사류를 제공하면서 순대를 이용한 동일한 메뉴판매시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본부 (032-468-3705)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권장 영업시간	권장 영업일수	비고
10:00 ~ 22:00	매월 26일(2월은 24일) 이상	연속하여 5일 이상 무단 휴업 불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및 위생	가맹점 내외부 청결관리 및 위생점검	수시방문	가맹 관리부	-
친절도	고객 응대 및 서비스 철저			
품질 관리	식재료 관리 및 메뉴얼 준수여부			

당사가 진행하는 위의 모든 관리, 감독은 가맹점을 일정수준(품질, 서비스, 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시 가맹점사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해늘참쌀순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및 지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가맹본사가 추진하는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총 광고비의 20%	총 광고비의 80%	광고기획 →가맹점사업자 분담분 산정 →1개월 전 분담금통지서 발송 →수령 후 7일 이내 지급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행사에 따라 유동적	행사에 따라 유동적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100%	총 광고비의 0%		
가맹본사가 추진하는 판촉 전체 행사	할인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증정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팸플렛 등 제작	행사에 따라 유동적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기타 전체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할인카드·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해당 없음		“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에 사전 및 협의가 필요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99m ² 기준	60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4) 번 항목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6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5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0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0	
가맹금 예치	- 서울보증보험	D-4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40~10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40~10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40~10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1) 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당사와 귀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가맹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

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취지 기타 상 관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 전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당사와 귀하의 협의에 의하여 전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당서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 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해늘참쌀순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합숙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매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늘참쌀순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협의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협의	협의	매년 필요시 교육
관리 판단에 의한 보수교육	협의	협의	관리자 혹은 가맹점 요구에 의한 교육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점 관리부(032-468-370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